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13.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11월 13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17일

라. 상정일자 : 제205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7. 12.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복지국장 김인문)

가. 제안이유

-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금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대(안 제3조)
-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연장(안 제5조)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권대광)

○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안 제3조의 지원기준을

첫째 아이 출생시 10만원을 지원하도록 신설하였고,

둘째 아이 출생시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셋째 아이 출생시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넷째 아이 출생시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구 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현 행	-	20만원	50만원	100만원
개정안	10만원	50만원	300만원	500만원

- 안 제5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기간을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였음.

○ 현재 우리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은 인구 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으며, 이는 노동력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잠재 성장률 저하, 사회보장 부담금 증가 등으로 이어질 것임.

○ 따라서 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양육의 어려움으로 출산을 꺼리는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이 필요할 것이며, 그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예산¹⁾이 수반되는 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2017년 출산장려금 예산 317,000천원 조례 개정시 1,274,300천원으로 957,300천원이 추가 소요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03 호
----------	---------

제출연월일 : 2017. 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의 확대 및 금액의 인상을 실시하고 신청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출산 장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의 확대 및 지원금액의 인상과 신청기간의 연장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사항	첫째아	-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2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 신설, 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17.9.28. ~ 10.18.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 인상
 - 조례 제3조 : “첫째아이 10만원, 둘째아이 50만원, 셋째아이 300만원, 넷째아이 이상 500만원”을 지원한다.
2. 비용추계 기준 : 최근3년간 평균 출산장려금 지급 기준
 - 산출내역 : 총 1,271,300천원

구분	[현행] '17.1월~12월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50만원 넷째아 이상 100만원	[개정] '18년 1월~12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300만원 넷째아 이상 500만원
산출내역	○둘째아 1125명 × 200천원=225,000천원 ○셋째아 140명 × 500천원=70,000천원 ○넷째아이상 19명 × 1,000천원=19,000천원 총 314,000천원	○첫째아 2168명 × 100천원=216,800천원 ○둘째아 1107명 × 500천원=553,500천원 ○셋째아 137명 × 3,000천원=411,000천원 ○넷째아이상 17명 × 5,000천원=90,000천원 총 1,271,300천원
총 소요금액	총 소요금액 1,271,300천원	

3. 비용추계 상세내역

(단위:천원)

구분	2017	지원금액	2018	지원금액	2019	지원금액	2020	지원금액
첫째아			2,168	216,800	2,171	217,100	2,159	215,900
둘째아	1,125	225,000	1,107	553,500	1,101	550,500	1,111	555,500
셋째아	140	70,000	137	411,000	135	405,000	137	411,000
넷째아이상	19	19,000	18	90,000	16	80,000	17	85,000
총계	1,284	314,000	3,430	1,271,300	3,423	1,252,600	3,424	1,267,400
최근 3년 평균	2013년~2015년		2015년~2017년		2016년~2018년		2017년~2019년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세입	○						
	○						
	소계(a)						
세출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1,271,300	1,252,600	1,267,400	1,257,600	1,257,500	6,306,400
	소계(b)	1,271,300	1,252,600	1,267,400	1,257,600	1,257,500	6,306,400
□ 총 비용(a-b)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국비							
시비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 등						
민간							
기타(구비)		1,271,300	1,252,600	1,267,400	1,257,600	1,257,500	6,306,400
합계							

6. 추가의견

- 없음

7.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국 가정복지과 임채운
연락처	02-2670-335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지원한다.

1. 첫째 아이 출생 시: 10만원
2. 둘째 아이 출생 시: 50만원
3. 셋째 아이 출생 시: 300만원
4. 넷째 아이 이상 출생 시: 500만원

제4조제1항 중 “관내(이하 “구”라 한다)에”를 “(이하 “구”라한다)관내에”로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제4조 제2항”을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출생신고 후 60일”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1항”을 “제4조제1항”으로 “60일”을 “6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를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영아”를 “대상 자녀”로 하

며, 같은 항 제2호 중 “관내”를 “지원대상자 및 대상 자녀의 관내”로, “및”을 “등재사항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제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를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 “출산지원금”을 “출산장려금”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송부받은”을 각각 “통보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를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로 한다.

제7조의 제목 “(환수조치)”를 “(환수조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출산을 저하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영아를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 3.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를 말한다. <p>제3조(지원기준)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둘째아이 20만원, 셋째아이 50만원, 넷째아이 이상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아이별로 지원한다.</p>	<p>제1조(목적) ----- ----- ----- 따라 ----- ----- ----- ----- -----.</p> <p>제2조(정의) ----- ----- 뜻은 다음과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란 ----- -----. 2. -----란 ----- -----. 3. -----이란 ----- -----. 4. -----란 ----- -----. <p>제3조(지원기준)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u></p>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12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구 관내에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며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로 한다.

③ 삭 제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

생아별로 지원한다.

1. 첫째 아이 출생 시: 10만원

2. 둘째 아이 출생 시: 50만원

3. 셋째 아이 출생 시: 300만원

4. 넷째 아이 이상 출생 시: 500만원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

-----(이하 “구”라 한다)관내에

-----.

② 제1항-----

-----.

제5조(지원신청 등) ① -----

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 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

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신청인에게 안내하고, 신청인은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구 거주기간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제6조(지원절차)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제4조제2항

②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제4조제1항

6개월

③ 제2항

1. 2. (현행과 같음)

제6조(지원절차) ①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각 호

1. 대상 자녀

2. 지원대상자 및 대상 자녀의 관내 등재사항 및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자 확인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송부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금조치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 경우 -----
----- 출산장려금 -----

----- 구청장에게 통
보하여야 -----.

③ ----- 통보받은 -----

----- 통보받은 -----
-----.

④ ----- 제3항에 따라 입금 조치-----

-----.

제7조(환수조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